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6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의 자격을 사고 발생 방지와 발생시 신속한 대피 등을 담당하는 총괄안전요원과 총괄안전요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사고 발생에 따른 응급조치 등을 담당하는 보조안전요원으로 이원화하여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현장체험학습의 유형을 “숙박형”과 “일일형”으로 구분하고,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종류를 “총괄안전요원”과 “보조안전요원”으로 이원화 하도록 정함(안 제2조).
- 나.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 중 총괄안전요원과 보조안전요원의 자격을 달리 정함(안 제14조).
- 다.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50명당 1인 이상의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이 배치되도록 하고, 숙박형의 경우 이동 경로별로 1인의 총괄안전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4조의2).
- 라. 총괄안전요원의 경우 안전사고에 대하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함(안 제15조).
- 마. 현장체험학습의 사전점검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papermoo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일일형”이란 학교를 떠나 관광, 관람, 견학, 강의 등의 비숙박형 체험학습

나. “숙박형”이란 학교를 떠나 일정기간 숙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이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총괄안전요원”이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후속조치를 총괄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나. “보조안전요원”이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진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제12조제2항 중 “각종 사고”를 “안전사고”로, “교통사고”를 “안전사고”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고예방”을 “안전사고 예방”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자격) ① 학교장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총괄안전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보조안전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또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7.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9. 교육감이 정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운영)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이 학생 50명당 1인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이동 경로별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총괄안전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공무원이 아닌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을 조회한 관련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의 배치와 관련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급학교에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활동이 우수한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원”을 “학교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사고”를 “안전사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총괄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현장체험학습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학교장을 보조하여 보조안전요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전사고에 대한 지휘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고”를 “안전사고”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현장체험학습 자체평가 및 사전점검)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자체평가 및 사전점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사전점검을 출발 14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 종료된 경우 14일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자체평가 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점검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학부모 등이 원활하게 자체평가 및 사전점검 자료를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제14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31일까지는 안전요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 략)</p> <p>1. (생 략)</p> <p>2. “<u>현장체험학습</u>”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p> <p>3. (생 략)</p> <p>4. “<u>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u>”이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현장체험학습</u>”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u>일일형</u>”이란 학교를 떠나 <u>관광, 관람, 견학, 강의 등의 비숙박형 체험학습</u> 나. “<u>숙박형</u>”이란 학교를 떠나 <u>일정기간 숙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u></p> <p>3. (현행과 같음)</p> <p>4. “<u>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u>”이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p>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총괄안전요원”이란 현장 체험학습의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후속 조치를 총괄하기 위하여 제 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나. “보조안전요원”이란 현장 체험학습의 안전한 진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제12조(현장답사) ① (생략)

②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전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제12조(현장답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안전사고 -----
----- 안전사고 -----

제13조(안전교육) ① -----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4조(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외여행인솔자 또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을 이수한 사람

6.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

안전사고 예방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자격) ① 학교장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총괄안전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보조안전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외여행인솔자 또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

- 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7.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8.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9.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도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서 인솔교사 외에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이 학생 50명당 1인 이상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소속 학교 교사로 하여금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배치와 관련한 예산을 각급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활동이 우수한 현

- 람
5.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7.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9. 교육감이 정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장체험학습안전요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2(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운영)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체험 학습안전요원이 학생 50명당 1인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숙박형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이동 경로 별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총괄 안전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공무원이 아닌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을 조회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의 배치와 관련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급학교에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활동이 우수한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에 대하여

제15조(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임무) ①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
은 교원을 보조하여 다음 각 호
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사고 발생 시 인원 대피 경로
확보 및 환자 이송에 관한 사
항

6. (생략)

②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안전
요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인원
이상이 참여하는 현장체험학습
의 경우에는 현장체험학습안전
요원으로 지정된 자 중 한 명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 책임자는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에 대한
지휘·감독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체험학습 지도·감독)
① (생략)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임무) ① -----

-- 학교장 -----

1. ~ 4. (현행과 같음)

5. 안전사고 -----

6. (현행과 같음)

② 총괄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
습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현장체
험학습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학
교장을 보조하여 보조안전요원
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전사고
에 대한 지휘 업무를 수행한다.

<삭제>

제16조(현장체험학습 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관련 사고 발생 시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매뉴얼 등을 학교장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8조(현장체험학습 자체평가) ①

학교장은 각급학교의 현장체험 학습 실시 이후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한 경우 지체 없이 평가 결과를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
안전사고 -----

③ (생략)

제18조(현장체험학습 자체평가 및

사전점검)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자체평가 및 사전점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사전점검을 출발 14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 종료된 경우 14일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자체평가 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점검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학부모 등이 원활하게 자체평가 및 사전점검 자료를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①교육부장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 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 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소방안전교육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 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4. 삭제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

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4. 삭제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

교

- 2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20.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②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